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제109호

2020. 9. 2.

건명	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제안 및 제출자	이계천 의원 외 3명	제안연월일	2020. 8. 25.
소관위원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8. 25.

보 고 내 용

제안이유

-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조례 기준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였으나, 관련기관의 사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의2에 따른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발전시설 설치관련 개발행위허가 기준적용의 특례 신설
(부칙 안 제3조 신설)

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8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